

위임업무 보고사항 (제136조 관련)

업무내용	보고 횟수	보 고 기 일	보고자
1.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	수 시	사고발생 시	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
2.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	연 4회	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	국립환경과학 원장
3.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·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	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
4.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	연료: 연 4회 첨가제: 연 2회	연료: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첨가제: 매반기 종료 후 15 일 이내	국립환경과학 원장
5.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,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	연 1회	다음 해 1월 15일까지	유역 환경 청 장, 지방환경 청장 또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장

비고 :

1.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2. 위임업무 보고에 관한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